

기 술 용 역 계 약 서

계약자	발 주 자	• 상호 또는 법인명칭 : (주)명성엔지니어링 • 사업자등록번호 : 176-87-00064 • 주 소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69번길 18, 301호 • 전 화 번 호 : 031) 886-7422 • 대 표 자 : 김 선 무
	계약대상자	• 상호 또는 법인명칭 : 주식회사 대한구조컨설턴트 • 사업자등록번호 : 214-88-21539 • 주 소 :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설악로 1810, 3층 좌측사무실 • 전 화 번 호 : 033)432-8733 • 대 표 자 : 조영진
계약내용	계 약 건 명	북삼교 재하시험 용역
	계 약 금 액	일금 팔백오십만원정(W8,500,000/VAT별도)
	계 약 기 간	2026. 02. 25. ~ 2026. 06. 20.
	기타사항	
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불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,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. 2026. 02. 25. 불임서류 : 1. 기술용역 계약조건 1부.		
(발주자)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69번길 18, 301호 (주)명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 선 무 (인)		(계약대상자)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설악로 1810, 3층 좌측사무실 주식회사 대한구조컨설턴트 대표이사 조 영 진 (인)

계 약 서

제 1 조 (총칙) “복삼교 재하시험 용역”(이하 “용역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의뢰자인 ㈜명성엔지니어링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.)과 실시자인 주식회사 대한구조건설터트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는 다음조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실행한다.

제 2 조 (용역의 범위 및 제반조건)

복삼교 재하시험

제 3 조 (계약기간) ① 계약의 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시행하며 착수일은 “갑”이 결정하여 “을”에게 통보한다.

② 다만,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“갑”과 “을”은 협의하여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 4 조 (대가의 지급 등) “갑”은 본 용역 성과품 제출 시 현금으로 지급한다.

제 5 조 (의무) ① “갑”은 본 용역 수행 시 발생하는 제반 행정절차 진행에 앞서 특히 본 용역 수행 시 요구되는 장비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을이 부담한다.

② “을”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,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한다.

③ “을”은 용역수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,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실시결과와 통보) “을”은 계약기간 중 성과품을 “갑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설계도서등의 열람) ① “을”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“갑”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계·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“갑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② 다만, 국방 기타 보안상의 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“갑” 또는 관련기관의 동의를 얻어 이를 열람할 수 있다.

제 8조 (계약의 변경) ①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“갑”과 “을”은 서로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한다.

②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이 발생할 때에는 “을”은 이에 대한 변경내역서를 작성하여 “갑”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.

제 9 조 (계약의 해제 및 해지)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- ① 천재지변, 전쟁,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할 때
- ② 파산 등 “을”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할 때
- ③ “을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

제 10 조 (보안사항) “을”은 용역수행 시 얻은 정보 또는 성과품 및 자료를 계약이행의 전·후를 막론하고 “갑”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.

제 11조 (기타사항) 이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재정경제원이 회계예규로 정한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과 관계법령에 의한다.

